

2026년 예천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

2026. 10.



예 천 군
[기 획 예 산 실]

2026년 예천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

1 감사개요

- ☐ **감사기간** : 2026. 08. 25. ~ 08. 28. (4일간)
- ☐ **감사범위** : 2024. 6월 이후 기관운영 전반
- ☐ **감사반** : 감사팀장 외 6명

2 감사결과

- ☐ **행정상 조치**
 - 11건(시정6, 주의5)
- ☐ **재정상 조치**
 - 4건(세입1, 추정3)
-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3 지적사항

- ☐ **관외출장 부적정 ⇒ 조치사항 : 시정**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VII.출장 1.출장의 정의 및 구분에 따르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됨.
 - 또한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조기 전달 등을 위해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함.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직원 경조사에 4인 출장처리, 운임영수증 미제출 등 관외출장에 부적정한 사실이 있음.
- 과다지급한 출장여비를 추징(**,***원)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예천군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읍면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지도를 하고, 준공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에 청소계획 1개월 전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서를 발부하고 청소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함.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청소안내 엽서 발송 부적정, 독촉 통지서를 미발송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안내 엽서 발송, 청소 독촉 통지서 발송, 청소실적입력 등 조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지원금 지원기준 미준수 ⇒ 조치사항 : 주의

- 지원금은 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서, 운영비 집행출납부, 차량계기판 사진, 차량운행일지, 근무일지, 수입·지출결의서 등 관련 정산서류를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읍·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제출된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예천읍에서는 2024년, 2025년도 지원금을 정산하면서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않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지방세 제증명 발급절차 미준수 ⇒ 조치사항 : 주의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7조(제공 정보의 범위 등)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본인 및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납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함.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법인·문중 등 단체 신청시, 일부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실제 신청자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확인·구분하지 않고 단체의 명칭을 신청인으로 하여 본인 발급 방식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신용카드 계좌관리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세출예산 집행 기준)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 기준(별표 4)을 준수하여야 하고, 별표 4(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 신용카드의 사용 회계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신용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 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 ⇒ 품의
-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 ⇒ 원인행위
-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 입금) ⇒ 지출

○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이용 대금을 입금 조치하고,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하여 통장 잔액이 지급될 금액과 일치하도록 신용카드 통장 관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함.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원의 잔액이 있어 카드사 청구금액 대비 카드결제 계좌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 미상의 잔액 ***,***원을 세입조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장애정도 재판정 업무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 의한 장애정도 판정기준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등록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재판정 통보는 재진단 기한 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장애 정도 재판정 안내 공문을 통보하고, 기한 내 미 이행 시 1개월 전에 재판정 촉구 공문을 통지하여 장애진단서 등 제출을 안내하여야 함.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재판정 통보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장애 정도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대상자의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를 실시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정부양곡 오입금 반환 업무 처리 부적정(절차미준수) ⇒ 조치사항 : 주의

-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3호에 따르면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는 아래와 같음.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사무명 24. 과오납 환부 총괄(이중수납) 건당 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기안은 실무자, 전결사항은 과장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내부결재 및 정당한 지출원인행위(반환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착오 송금된 금액을 임의로 반환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건설공사 준공(폐기물 처리확인) 처리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리(***길) *** 정비공사」, 「***리(****) **복구공사」에 대하여 도급업체로부터 폐기물처리계획을 예천군수에게 신고토록 하고, 준공 시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요구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지않는 등 처리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미정산하여 준공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상기 공사의 폐기물 처리금액을 정산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영농안전장비 농가 공급 부적정 ⇒ 조치사항 : 주의

- 해충 방제, 제초작업 등 영농 작업 시 농약, 돌 등으로 인한 중독, 상해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영농안전장비를 농가에 공급하여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에서 일괄 구입 후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현물 지원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시 면에서는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최근 3년간 지급된 사실이 없는 농가 우선 배정하며, 지급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특정인에게 수년간 연속하여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2025년 영농안전장비를 지원하면서 최근 3년 내 지급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급(*회)하여 영농안전장비 공급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 조치사항 : 시정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1항에 따라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함. 다만, 「주민등록법」 제2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각 호의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으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제2항에 따라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주민등록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제2호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IC칩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아닌 건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집적회로(IC)가 내장된 주민등록증 발급 접수 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수수료를 징수하시고(*건, **,***원),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절차 부적정

⇒ 조치사항 : 주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18조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음.

- 그런데 예천읍에서는 감사대상 기간 중 상기 내역과 같이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시 당사자에게 서면 사전통지 없이 과태료 부과를 한 사실이 있음.
-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

4 모범 사례

1 빈집 무단투기 예방 강화 시책 추진

추진배경

- 관내 빈집 증가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불편 및 환경오염 우려
- CCTV 미설치 지역이 대부분으로 투기자 특징이 곤란하여 사후 단속 중심의 대응에는 한계
- 빈집은 상시 관리가 어려워 반복적인 무단투기와 악취·해충 등 주민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빈집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소유자 협조를 통한 사전 예방체계 구축 필요

추진개요

- 기 간 : 2026. 5월부터 시행
- 대 상 : 관내 빈집 중 무단투기 발생 및 우려 지역
- 내 용 : 빈집 현장점검, 소유자 협조 요청, 안내판·현수막 설치 및 방치 폐기물 환경정비

추진계획

- 현장점검을 통해 소유자에게 청결 유지 의무 및 자체 관리 협조를 요청하고 안내판·현수막 설치 등 무단투기 사전 차단



추진실적

- 빈집 주변 무단투기 취약지역 및 우려지역 현장점검·환경정비·안내판·현수막 설치 등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기대효과

- 빈집 주변 방치 폐기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악취·해충 등 환경 위해요인 해소
-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 사후처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빈집 무단투기 관리체계 구축